

보도시점

2026. 2. 24.(화)
국무회의 의결 시

배포 2026. 2. 24.(화) 09:00

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.16(금) 발표한 바 있으며, 법제처 심사,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 의견과 1.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금일 국무회의에서 **【별첨】**의 수정사항 및 2.12(목)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, 같은 날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하여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.27(금) 공포될 예정입니다.

【 별 첨 】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- 소득세(4211~3, 4215~4217), 법인세·과세자료법(4221~4, 4226), 상속증여세·종합부동산세(4311~2, 4314, 4316, 4308), 금융세제·교육세(4231~4, 4236), 부가가치세·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(4322~3, 4326), 개별소비세·주세·조세범 처벌절차법(4331, 4337), 국제조세(4651, 4653, 4656~7), 조세특례(4131~3, 4136), 관세법·관세환급특례법·관세사법(4411~3, 4416, 4418, 4461~3),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세무사법(4151, 4154)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4121, 4126)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진규 (044-215-41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준 (wonjun220@korea.kr)



별첨**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****1. 소득세법 시행령**

-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(소득령 별표1)

당 초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농가부업규모 축산 비과세 대상 추가 ○ 개 400마리(단, '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)	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범위 확대 ○ 400 → 500마리

〈수정이유〉 부처협의 결과 반영

2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□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(상증령 §12(1))

당 초 안	수 정 안
<p>□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조정</p> <p>○ 비영리내국법인·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(외국법인·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)</p> <p>※ (적용시기)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</p>	<p>□ 적용시기 조정</p> <p>○ (좌 동)</p> <p>※ (적용시기) 영 시행일 이전 출연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</p>

〈수정이유〉 적용범위 명확화

3.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□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(중부령 §3①)

당 초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○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<p>※ (적용시기)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시기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>※ (적용시기) 영 시행일 이후 신고, 결정,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</p>

〈수정이유〉 부처협의 결과 반영

4.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(조특령 §97의3)

당 초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용)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70% 장특공제율 적용 ○ (양도차익 계산) 취득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양도차익 $\times \left(\frac{\text{임대 종료일 기준시가} - \text{취득시 기준시가}}{\text{양도시 기준시가} - \text{취득시 기준시가}} \right)$ 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산방법 합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임대기간중 발생분으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양도차익 $\times \left(\frac{\text{임대 종료일 기준시가} - \text{임대 개시일 기준시가}}{\text{양도시 기준시가} - \text{취득시 기준시가}} \right)$

〈수정이유〉 계산방법 명확화

②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(조특령 §104의24)

당 초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○ 「자본시장법」상 공시 절차 준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시방법 변경 ○ 「기업가치 제고계획」 공시 ※ 금융위·거래소는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(26년 한정)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(예시)을 배포할 계획

〈수정이유〉 부처협의 결과 반영

5. 국세징수법 시행령 · 관세법 시행령

□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(국징령 §105, 관세령 §141의5①)

당 초 안	수 정 안
<p>□ 명단공개 제외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납액 납부비율($B/(A+B)$)이 50% 이상인 경우 - (A)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- (B)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(관세)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 	<p>□ 납부비율 계산방식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$(B+C)/(A+B)$ - (좌 동) - (B)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 - (C) 명단공개 연도 1월 1일부터 국세(관세)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

〈수정이유〉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명확화